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6일, 이강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6.) 상정 ·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 22.)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상정 · 축조심사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 상정 ·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7. 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강일의원)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 신설, 제635조제4항제3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로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5.)로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